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
■ 김성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842호)

2026. 3.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문 성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 1) 발 의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2) 발의연월일 : 2026. 2. 12..
- 3) 회부연월일 : 2026. 2.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포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해당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물자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전문성 확보 등에서 한계를 초래하고 있음.

특히 첨단기술을 활용하거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높은 시범사업의 경우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으로 추진하기 어려움.

이에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방위사업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군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바목, 제8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을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방위사업 계약 및 협약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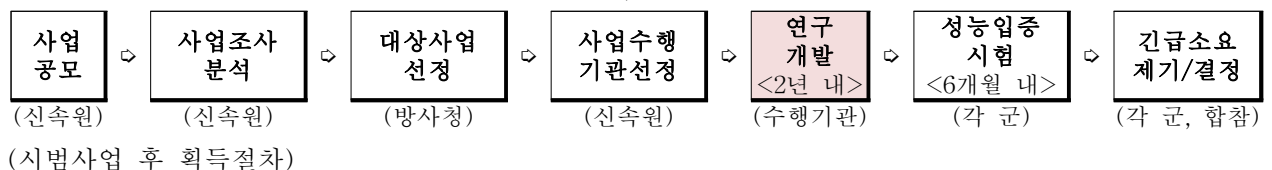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5. ----- -----.
가. ~ 마. (생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설>	바.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u>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u>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① ----- ----- -----. ----- ----- ----- ----- ----- ----- -----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호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을----

현행	개정안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② ~ ⑨ (생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 현행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¹⁾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

시범사업(신속연구개발사업²⁾)은 신기술을 신속하게 국방 분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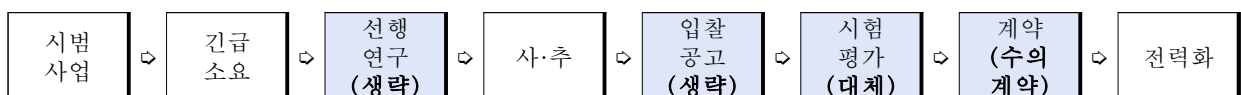
- 1) 「방위사업법」 제17조의2 (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호·제2호의 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과 제3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능입증시험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각군
 2. 국방과학연구소,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기술품질원
 3. 제21조제6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 ③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성능입증시험팀의 구성·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시범사업 대상사업 기준) 사업비 500억원 이내, 개발기간 2년 이내 등



적용하기 위해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제품을 개발한 후,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사업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반 자동기뢰탐지체계’ 등 10건을 수행하였고, 육군은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1건³⁾을 수행중임.

[최근 3년간 방위사업청 신속시범사업(R&D) 현황]

사업 선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수행기관	시범운용	사업단계
'23년 (5개)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기반 자동기뢰탐지체계	287	한화 시스템	해군	시제품제작
	상용저궤도위성 기반 통신체계	399	한화 시스템	육군, 해군, 공군	
	AI기술 기반 유·무인 복합 한국형 공병 전투차량	338	한화 에어로	육군	
	소형전술차량 탑재형 120mm박격포체계	217	SNT 다이내믹스	해병대	
	중형 무인기 공통플랫폼 개발	499	국과연	육군	
'24년 (3개)	지능형 40mm 무인방공시스템	288	한화에어로	해병대	
	여단급 이하 MANET 통신체계	154	LIG넥스원	육군	
	구조함 탑재 한국형 수중무인탐사기	174	대양전기 공업	해군	



3) [최근 3년간 각 군 등의 시범사업 목록]

군별	사업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육군	후방지역 사단급 이하 전술통신체계	'25. 10월 ~ '27. 9월	96.6억
해군, 공군, 해병대	없음		

사업 선정	사업명	사업비 (억원)	수행기관	시범운용	사업단계
'25년 (2개)	지능형 전자기전 기반 대드론체계	103 (예상)	LIG넥스원	육군	
	대드론 하드킬 근접방호체계	187 (예상)	미정	공군	업체선정 중

*자료: 방위사업청

□ 한편,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4)에서는 방위사업청장이 방위력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현재 국방연구개발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① 방위사업청장은 연구기관등으로 하여금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와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협약을 선택적으로 체결할 수 있고, 같은 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1.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
2. 국방연구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연구개발주관기관 외에 해당 국방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연구개발참여기관”이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제2조제5호에서 국방연구개발사업을 열거하고 있고,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⁵⁾에서 규정하는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각군 참모총장 등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는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로 규정하여 문언상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의 경우에만 국방연구개발사업에 포함될 수 있고,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도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여기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음.

이로 인해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은 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계약 방식이 아닌 일반정부계약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음.

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 개정안은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국방 연구개발사업의 범주로 포함하여, 방위사업 계약 규정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음의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도 방위사업 계약 등의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방산업체등은 비용측면에서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이 적용되어 실발생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고, 거래대금 측면에서 착수금과 중도금을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음.

[일반정부계약과 방위사업계약 비교]

구분	일반정부계약	방위사업계약
근거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적용 대상	국가계약(공공조달계약) 전체	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방연구개발 ⁶⁾ 나. 무기체계의 양산 및 운용에 필수적인 전력화지원요소(부대시설, 군사교리, 부대편성을 위한 조직·장비, 교육훈련 및 주파수는 제외한다), 정비 관련 장비 또는 정비 용역 다. 방위산업물자 라. 심각한 안보 위협, 테러 등의 긴급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마. 장병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군수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구분	일반정부계약	방위사업계약
원가 계산	일반물자 원가계산 기준 적용→ 시장평균비용 적 용 ⁷⁾	방산물자 원가계산 기준 적용→ 실발생비용 보전 ⁸⁾
선금/ 착중도금	선금 지급(70% 한도) ⁹⁾	착수금·중도금 지급(90% 한도) ¹⁰⁾

둘째,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계약 방식에는 ‘계약’ 방
식과 ‘협약’ 방식이 있음. 시범사업을 ‘협약’으로 추진하게 되면,
방위사업청 입장에서는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
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을 변
경¹¹⁾할 수 있어 시범사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음.¹²⁾

6)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

7) 「예정가격 작성기준」(기재부 계약예규)

8) 「방산물자대상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22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비목으로서 실제 발생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산출기준과 산출방법은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원가계산 관리지침(방위사업청예규)

9)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34조(적용범위)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
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선금의무지급
률 이하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바에 따라 지급한다.

10)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제61조의7(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 ② 착수금 및 중도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범위에서 지급하되, 착수금과 중
도금을 합한 지급총액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
사업청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1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4조(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③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
여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이 변경되어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2회계연도 이상에 걸치는 협약을 체결한 과제에 대하여 정부의 예산 사정 또는 국방연구개
발사업의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주관기관(이하 “연구개발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을 사유로 협약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방산업체등의 입장에서는 사업 지연시 지체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재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도전적 R&D와 핵심기술 적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받을 수 있음.

[국방연구개발사업 계약 방식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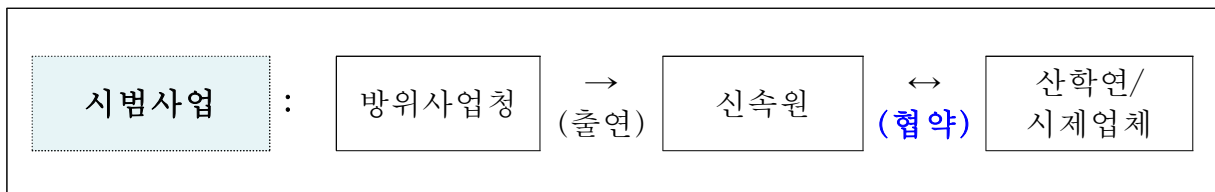
구분	계약	협약
근거	「국가계약법」, 「방위사업법」 등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등
주요 특징	계약 후 정책적 변화가 있더라도 합의 없이 수정 곤란(경직성)	정책적 필요시 내용변경 가능(유연성)
적용 대상	(원칙) 무기체계 개발사업	(원칙)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기타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예외) 핵심기술, 미래도전국방기술, 기타 신기술 활용 연구개발	(예외) 무기체계 개발사업 중 탐색 개발사업, 체계개발사업 중 공동 투자 사업으로 500억원 미만 사업
위반효과	계약상 손해배상책임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이행보증금 몰수	정부출연금 환수
	국가 R&D 사업을 포함한 all 정 부조달 계약 입찰참가 제한(부정 당제재) ¹³⁾	국방연구개발 참여제한
	사업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¹⁴⁾	사업지연 시 지체상금 없음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12) 반면 ‘계약’ 방식의 경우 계약 후 정책적 변화가 있더라도 합의 없이 수정이 곤란함.
「방위사업법」 제46조의5(계약의 변경) 계약당사자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된 당초의 방위사업계약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의 기간, 금액 또는 조건 등을 변경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서 계약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제3조제15호가목의 국방연구개발계약으로서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당초 계약된 금액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13)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에 따라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그 추진 주체가 방위사업청장인지 또는 각 군인지에 따라 계약체결 방식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음.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¹⁵⁾에 근거하여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1항 후문 단서에 따라 ‘협약’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방위사업청의 시범사업 추진 절차]



□ 다만, 다음의 점에 대한 추가적인 수정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 제8조제1항의 국방연구개발 추진 주체에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시하고, 방

14) 「방위사업법」 제46조의4(지체상금의 부과 및 감면) ①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방위사업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15)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국방연구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을 말한다.

가. 무기체계의 연구개발

나. 「방위사업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소요가 결정되거나 소요 결정이 예상되는 무기체계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다. 미래도전국방기술의 연구개발

라. 그 밖에 신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 등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연구개발

마. 「방위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전력지원체계의 연구개발

위사업청장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방위사업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수행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각 군이 주도하는 시범사업의 방위사업계약 방식을 제2조제5호가목과 같이 원칙적으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방위사업청장이 추진하는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협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과 맞추고, 시범사업의 목적이 신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군 활용성을 확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협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8조 수정의견]

개 정 안	수정의견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제8조(국방연구개발사업 추진방법)
① -----	① -----
-----	-----
-----	-----
-----	-----
-----무	-----무
기체계 연구개발사업 및 같은 호	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을-----
바목에 따른 시범사업을-----	-----

개 정 안	수정의견
----- ----- ----- ----- <u>라목까지</u>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 ----- ----- ----- <u>라목까지</u> 및 <u>바목</u>-----.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u>⑩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u> <u>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u> <u>하여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시</u> <u>범사업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u> <u>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u> <u>“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u> <u>으로 본다.</u>

문 의 처

02)6788-5312